

영등포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1.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 주요내용

1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3가 18-1
- 소 유 자 : 국(재정경제부)
- 대지면적 : 452.5㎡
- 소요예산 : 1,479,675천원

2 재활용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8외 11필지
- 소 유 자 : 영등포구
- 대지면적 : 756.7m²
- 소요예산 : 5,653,778천원

검토의견

- 먼저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관련 장소확보가 어려워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매입할 토지에 우리구 ‘청소근무자 대기실 및 청소 창고’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이곳에 건립될 재활용시설 부지 매입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우리구 양평동3가 18-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 452.5m²(137평)로, 취득예정가격은 14억7천9백67만원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재정경제부(관리:한국자산관리공사)소유 토지이며, 부지매입 조건으로 우리구가 1년간 무상사용을 하였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년간 유상대부 승인을 득하여 대부료를 1년간 선납(2,712만원)하여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가 아닌 부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선, ‘200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됨으로, 향후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등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재활용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제13조2에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부지매입은 2006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했습니다.

이 부지매입 대금은 총20억6천9백만원으로 5년 연부로 취득할 예정이며, 올해 4억6천6백21만원의 1회 분납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신축할 건물면적은 2,442㎡로, 취득예정 가격은 56억5천3백77만원이며, 기 확보(명시이월)된 2억5천만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산동 재활용센터는 1985년에 건립된 조립식 판넬구조의 노후된 건물로서 사용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역시 노후된 경로당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번 복합건물 신축 건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5.

보 고 자 : 김 병 옥

붙임 :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